

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

1.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임산부의 경우 센터에서 시행중인 바우처택시 사업의 이동지원이 가능하오며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출산후 6개월 까지입니다.
- 임산부 바우처택시의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일부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이용목적은 용인시 관내·관외 이용시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병원진료의 목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이용요금은 1회 이용시 기본료 1,500원이며, 택시요금은 용인시에서 지원하나 일부 지원금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.
- 바우처택시는 임산부 및 가족보호자를 위한 제도로 이용대상자의 목적외 타인의 이동을 위한 이용을 금지합니다.

2. 이용자 준수사항

- 바우처택시는 임산부를 위한 제도로 이용대상자의 목적외 타인의 이동을 위한 이용을 금지합니다.
- 바우처택시는 편도원칙이며, 관내 탑승만 가능합니다.(관외 병원목적 이용시 용인 복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)
- 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031-526-7755)로 차량배차요청을 하여야하며, 바우처택시가 도착하면 바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탑승위치에 대기하여야 합니다.(차량 도착후 탑승지연시 회차 할 수 있으며, 지연탑승이 잦은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- 바우처택시는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차량으로 다수의 이용 요청에 따라 차량 배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.
- 차량 이용중 운전기사에게 폭언, 폭행 및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차량 이용은 센터에 요청한 출발~도착지가 동일하여야 하며, 차량 이용중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하게 목적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센터에 전화를통해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목적지 변경 빈도가 많을 경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인화성물질 소지 및 음식물을 섭취(음료제외)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서 약 서

본인은「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,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,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Ⓜ